

제조물 책임법 운용 효율화 방안

본 회 전자기기부품산업팀

1. 제조물책임법 개요

1. 제조물책임법의 성립배경

현대의 대량생산체제는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제조물책임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첫째, 오늘날의 제품은 복잡한 설계와 고도의 과학기술로 제조되어 제조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 제품결함을 비교적 용이하게 발견해 낼 수 있는 반면 소비자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근본적인 제품결함을 발견하기 어렵다.

둘째, 오늘날의 제품은 동일한 설계와 공정에 따라 자동화 및 규격화된 동일 제품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셋째, 제조자는 제품의 대량생산 및 판매로 거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이에 반해 제품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불합리하다는 논리가 지배적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기업이 자신만의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사회의 하부조직으로써 기업자체의 이익을 증진함과 동시에 사회전체의 복지를 보장하고

증진시켜야 한다는 사회 경제적 요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환경과 전략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정부나 관계 기관의 규제 및 제품의 안전에 관한 표준설정을 요구하게 되고, 제품에 다소 결함이 있더라도 소비자가 증명해야 했거나 제조자에게 별로 그 책임을 묻지 않았던 법률기준도 제고되어 제조물책임법이라는 소비자 지향적인 법적 체제가 성립하게 되었다.

2. 제조물책임법의 목적

국내 제조물책임법의 목적은 일본의 제조물책임법과 동일하다. 본 법 제1조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보호'를 선언하고, 피해구제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법률시행의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법률에 담긴 목적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나 1994년 시안이 '소비자의 피해구제'로 그 목적을 제한하던 반면, 제조물책임법은 일본의 제조물책임법과 같이 '피해자 구제'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구 분	PL법 시행 前	PL법 시행 後
책임요건	-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불법행위·보증책임)	- 제조물의 결함 (무과실·엄격책임)
입증범위 (소비자)	-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 제조물의 결함 여부 - 손해발생과의 인과 관계

3. PL법 시행 前後 차이점

제조업자는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와 제조물 결함의 인과 관계 성립만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무과실·엄격 책임)

제조업자의 책임요건 확대로 제조물책임 분쟁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 경우 제조물 결함 유무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중요 쟁점이 된다.

도에는 지방법원의 제조물 책임소송 제기건수가 1만 9,428건에 달하였다. 또한 제조물책임 배상금액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해마다 급등하여 1988년에는 소송 당 평균배상금액이 1,535,944달러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중반 두 번에 걸친 급격한 보험료의 상승과 보험인수의 거부로 보험가입 없이는 생산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된 미국사회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는데, 이를 '제조물책임 위기' 또는 '보통위기' 라고 한다.

II. 제조물책임법 시행 각국의 동향

1. 미국

과실책임의 법리로 시작된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은 1963년 미국 캘리포니아 최고재판소의 Greenman vs. Yuba power products Inc. 사례를 통하여 엄격책임의 법리가 발전하게 되었고, 이는 1965년에 공포된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 제402조 A에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엄격책임의 법리가 적용된 1962년의 Greenman 사례이후 1979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미국제조물책임과 관련된 가장 큰 특징은 소송의 급격한 증가와 배상금액의 고액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제조물 책임소송 건수는 지방법원의 경우 1974년 1,579건에 불과하였던 것이 1988년에 1만 7,140건에 달해, 14년간 약 10.9배 증가하였다. 그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

2. 영국

영국은 지금까지 EU가맹국과 기타 유럽나라와 마찬가지로 제조물책임소송의 증가나 피해배상액이 상승하는 경향은 생기지 않고 있다.

영국에서 소비자보호법이 쟁점이 된 판례가 공식화 된 것은 몇 개건에 불과하며 제조물책임의 보험료가 약간은 상승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폭등한 것은 아니며, 그 원인 또한 생활수준의 상승, 인플레이션 등 제조물책임법제정과는 무관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은 미비한 영향에는 영국이 유럽 각국 중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에 속하지만 소송제도에 있어서는 상당한 실질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배심제는 존재하고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실정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존재는 하지

구분	사고클레임	품질클레임	일반상담	부가질문	계
1998	12	45	588	377	1,022
1997	13	22	497	521	1,053

만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인정되는 일은 드물다. 또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제도는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에 의해 EU지침 도입후 영국은 미국과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왔고, 현재 그러한 경향을 따르고 있다.

3. 독일

독일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시행의 영향은 영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조물 책임법이 종래의 민법에 비하여 배상책임한도액 설정, 제조업자에 대한 면책액 인정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하에 전통적인 민법에 의거 소송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4. 일본

일본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도입이 많은 소송을 초래해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고 보험료와 소비자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러한 의견은 미국에 있어서 제조물책임소송이 다수 일어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7월 1일에 시행한 후 특별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송으로 간 사건은 1건에 그칠 정도로 미미한 정도이다.

이러한 결과는 '재판외분쟁조정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외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제도가 시간과 비용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으며, 일도 양단적인 해결

로 인하여 당사자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대안으로 제시된 제도이다.

재판외 분쟁조정기구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현재 산업별 13개 PL(제조물 책임)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PL센터는 꾸준히 상담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나, 조정 실패 등으로 인한 소송 증가 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한국

1) 소송에 미치는 영향

제조물책임법의 목적이 원고측 즉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자의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책임요건이 기존의 민법과는 달리 주관적인 '고의 과실'에서 객관적인 '결함'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재판에 있어서 결함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을 유연하게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소비자의 소송에 대한 저항감의 감소로 지금까지 표면화되지 않았거나 상대교섭으로 처리되었을 사례를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빈번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승소율도 어느정도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송자세가 종래보다 소비자측에서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원고의 청구액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으로 제조기업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송

비용과 배상액에 대한 부담이다.

제조물책임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 긍정적영향으로는 제품안전 향상, 생산라인의 재설계, 제품사용법 및 경고의 개선 등이며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시장점유율의 감소, 기업합병이나 인수 저조, 신제품개발 및 기술혁신이 위축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 제조물책임보험에 미치는 영향

196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미국의 경우 일반책임보험에서 생산물책임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0.1% (1994년 기준)로 미미한 상태이다.

보험사에 제조물책임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이며, 기업의 보험인식 수준도 낮은 편이다. 또한 리콜은 보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인수대상이 폭넓지 못하며, 위험율의 측정에 따른 보험을 산출방법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험료를 상승시킬 여부는 불확실하다.

4) 제품안전과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

제조물책임법은 기업이 결함제품에 기인하는 사고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결함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억제하고, 안전향상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기업에 대한 적절한 책임비용의 부과제 조자의 안전제고 노력과 주의를 강화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엄격책임하에서 사고가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조자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 사고 억제노력을 하나, 소비자는 사고억제노력을 할 유인이 없으며

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한 사고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제조물책임 비용의 증가는 제품안전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노력을 강화할 유인책이 되는 반면, 신제품이나 새로운 제품 디자인에 수반하는 위험을 제거 또는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높으면 연구개발이 위축될 수 있음이 여러 학자들의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바 있다.

5)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제조물책임법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파급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있게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품목의 상품은 완구 및 놀이기구, 식품, 보건 및 위생용품, 가전제품, 차량 등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은 이러한 위해 위험이 산업 성격상 내재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격상승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III. 호을화 방안

1. 재판외 PL분쟁조정기구 설립

1)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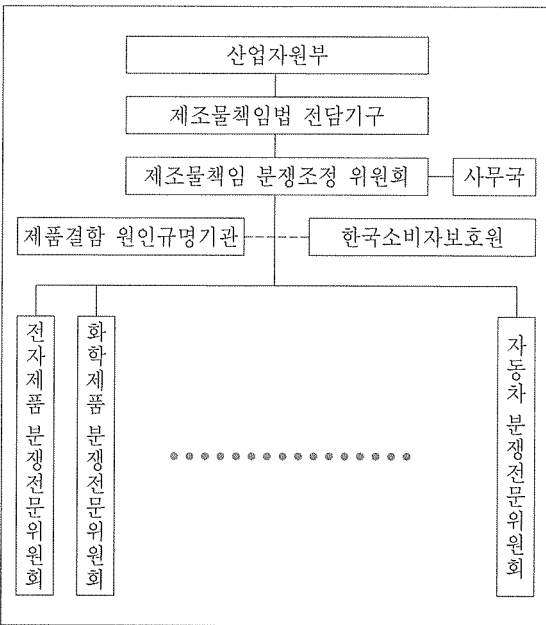
제조물책임 소송사건의 경우 소송의 성격과 갈수록 장기화되고 복잡해지는 추세에 있어, 소송에서의 승소여부에 관계없이 제조자 및 피해자 양자간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규모 및 역량을 고려할 때 제조자와 소비자 양자의 입장

을 충분히 고려한, 신뢰성 있는 PL분쟁조정 기능이 취약하다.

따라서 양자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송 전 단계에서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재판외 PL분쟁 조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2) 설립 방안



가. 성격

산업자원부내에 준 정부조직으로 적절한 법규에 따라 “제조물책임법 전담 기구” 설치

나. 역할

제조물책임법 관련 산업지원정책 연구 및 정책대안 제시, “제조물책임분쟁조정위원회(가칭)” 구성·운영, 효율적 제조물책임 분쟁 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분야별 분쟁전문위원회 구성·운용 지침 마련 및 관리, 제품결함 원인규명기관 설치·운용 지침 마련 및 관리), 기타 제조물책

입법 관련 산업지원 역할 수행

다. 재판외 PL분쟁조정시스템 및 기능

① 제조물책임 분쟁조정위원회

『제조물책임 분쟁조정 위원회(가칭)』는 위원장을 포함, 상임 및 비상임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산업자원부 관련 부서장의 제청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의 임명(상임 위원의 경우) 또는 위촉(비상임 위원의 경우)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 일정한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다. 또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 기구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합당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재직하는 자, 법조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다.

② 업종별 분쟁조정 전문위원회

정부의 지침에 따라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업계,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제품결함 원인규명기관의 사실조사 및 시험검사 결과, 분야별 분쟁조정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조물책임 분쟁을 조정하고 합의토록 유도한다.

③ 원인규명기관

분야별 국공립 시험연구소의 기능, 시설, 인력 등을 확충하여 원인규명기관으로 활용하며 분야별 분쟁조정 전문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제품결함의 유무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을 시험 검사한다.

2. 제품결함원인규명기관 확충

1) 필요성

제조물책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귀책 여

부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결함 및 사고원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요소이다.

PL분쟁 조정이나 소송 과정에서 제품결함에 대한 원인 규명을 전문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결함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 확충 방안

국내 시험·검사기관 및 국공립 연구소를 PL 관련 결함 원인규명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인력 및 시설을 확충한다.

3. 제조물책임보험제도의 정비

1) 필요성

기업측면에서 결함 제조물에 의한 손해의 조정, 소송행위 및 배상금 지급 등 각종 업무에 요구되는 시간과 인력을 보험사가 전담토록함으로써 이에 수반되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2) 정비 방안

가. 보험약관의 개선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제조물책임 보험제도는 미국의 보험제도를 그대로 도입·운영하고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과 국내 실정에 맞는 약관의 개선이 필요하다.

나. 보험요율의 정비

현재 재 보험사가 제시하는 요율에 일정율을 가산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조물책임보험에 적합한 독립적인 요율이 없다.

우리 실정에 적합한 요율 체계를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미국의 ISO(Insurance Service Office)에서 제시하는 요율(표준요율)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경험통계가 집적되면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다. 준비금 적립의 체계화

1980년대 미국의 경우 파산한 보험회사의 지급 불능 원인 중 하나가 부적절한 준비금 적립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 준비금 적립의 충실화는 원활한 제조물책임보험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손해보험회계규정에 따라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조물책임보험과 같은 보험사고발생과 보험금지급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험 종류의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준비금 적립의 충실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라. 언더라이팅(Underwriting) 전문화

제조물책임보험을 포함한 배상책임보험은 일반보험과 달리 국제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담보 지역의 법적·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위험인수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재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 보험자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험구분별 언더라이팅 가이드 구비와 함께, 분야별 전문 언더라이터를 질적·양적으로 양성하여 제조물책임보험 시대에 대비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법 대응력 제고

1) 필요성

대기업의 경우 제조물책임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한 전사적 체제 구축을 시도하였거나 시도중에 있다. 그러나 자본 및 인적 조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며,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제고 방안

가. 정보제공 체제 구축

중소기업이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제품안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를 정비하도록 지원한다.

나. 중소기업전용 제조물책임보험제도 마련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가중이 예상되고 있어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제를 신규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 피해구제에 용이하거나, 제품안전 강화를 통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라 소송의 증가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제품원가의 상승, 품질관리 체제 및 경영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체의 부담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 또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최대한 보장하고 예측 가능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제조물책임 사건 해결과정에서 앞서 언급된 방안들 (제조물책임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제조자 소비자 양자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바로 제조물책임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제조물책임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합의를 유도, 분쟁조정에는 각 분야별 분쟁조정 전문위원회의 의견과 원인규명 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제조자의 책임이 분명한 경우 제조물책임보험을 통한 배상액 제시를 통한 최종적 조정안을 제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측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위해 참여하게 되며, 분쟁조정에서도 조정안이 양자간 수락되지 않는다면 이를 재판에 회부, 법적인 절차를 수행)과 같이 체계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